

제정일	2008.11.01.
개정일	2025.02.24.
주관부서	구매팀/법무팀
전결권자	부문장

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세칙

한화엔진 주식회사

목 차

제1조 (목적).....	3
제2조 (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)	3
제3조 (업무 구분).....	3
제4조 (심의위원회 개최)	4
제5조 (심의위원회 의결)	4
제6조 (서류 보존).....	4

공정 00-02-00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세칙

제정 2008-11-01

제7차 개정 2025-02-21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한화엔진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)

- 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“심의위원회”)는 그 구성요건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하여 운용하고, 월 정기 회의는 그 위원장 및 구성인원이 참석하는 “실적보고회의”등을 통해 수행한다.
-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
 1. 위원장: 구매 담당
 2. 위원: 구매 산하 팀장 등
 3. 간사: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

제3조 (업무 구분)

-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1.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
 2. 협력업체 미 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을 심의
 3.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 사전 시정 조치 및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의 임직원 제재 건의
 4. 하도급법에 근거한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계약서에 첨부된 ‘개별 계약 건 적법성 Check Sheet’를 활용하여 심의 (해당 업무는 계약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적용)
 - 가. 서면계약서 사전 발급의무 준수 여부
 - 나.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의무 준수 여부
 - 다.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
 - 라. 부당한 이익 요구 금지의무 준수 여부
 - 마. 부당특약 설정 금지의무 준수 여부
 - 바. 기술자료요구 금지의무 준수 여부
 - 사.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 여부

아. 납품대금연동제 준수 여부

자. 경영간접 금지의무 준수 여부

5. 심의위원회는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후 심의

가. 법정 지급기한 내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

② 단 전항의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계약 금액에 50억원 이상인 때로 한다.

③ 구매 부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.

제4조 (심의위원회 개최)

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.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제5조 (심의위원회 의결)

① 심의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/3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고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 (서류 보존)

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의 보존연한은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. 단, 기술자료에 관한 심의 자료는 보존연한을 7년으로 한다.